

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11월 29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3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11월 29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금천구의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위한 분뇨 수집·운반업체 대행 재계약 방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분뇨수집·운반 대행업체 재계약 방법 변경(안 제5조3항)
- 대행업체 적격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 신설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분노 수집·운반업체의 대행 재계약에 있어 적격심사 절차를 신설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) 주요 내용

- 분노수집·운반 대행업체 재계약 방법 변경(안 제5조3항)
 - 재계약 방법을 적격심사를 통한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변경함
- 대행업체 적격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 신설)
 - 적격심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·구성·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함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9조)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분노 수집·운반업체의 재계약에 있어 적격심사를 신설하여 업체와의 계약 및 선정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이와 관련하여, 적격심사에 따른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